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및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거창군  
조 치 기 관 거창군  
내 용

○○○ 등 [별표 1] 기재 17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인, 이장·통장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역 견학, 벤치마킹, 자료수집 등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지방자치단체 훈령, 규칙)에 따라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허가 등을 하고 있다.

### 1.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운영기준 제6조 제2항과 [별표 12] 및 집행기준 Ⅲ-8-2.와 Ⅲ-8-4.의 규정에 따르면 편성목인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예산항목이므로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의 하위 통계목인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에 국외여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sup>1)</sup>은 국가(지방)단위 행사 참석, 산업시찰·견학을 위한

여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선진지역 견학, 벤치마킹, 자료수집 등을 명목으로 농업인, 이장·통장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에 한정하여 행사 참석, 산업시찰·견학을 위한 여비 등을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민간인의 국외여비를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3. 21.~4. 18.) 중 [별표 1] 기재 17개 기관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실태(2014~2015년)를 점검한 결과, ▲▲▲은 2014. 11. 24.부터 11. 28.까지 농업경영인회 소속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농산물시장 방문, 주변 명승지 탐방 등 관광 일정이 포함된 단순 견학 위주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으로 2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는 2014. 8. 10.부터 8. 14.까지 선진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을 시찰한다는 목적으로 관내 읍·면·동 체육회장 12명<sup>2)</sup>을 대상으로 중국 연변과 용정 일대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견학하고 백두산·모아산 국립공원을 등반하는 일정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으로 17,000,000원을 지원하였다.

-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행정자치부 의견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일반보상금’의 하위 통계목으로 민간인의 국외 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는 집행할 수 없음
- 2) 계획서 상 27명의 여행대상자(인솔공무원 1명 포함) 중 17명의 민간인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1인당 1,000,000원)하였는데 실제로는 12명만 여행을 다녀옴(나머지 5명은 여비 수령 후 미반납)

또한 **△△△**시는 2015. 4. 11.부터 4. 16.까지 관내 이장·통장 49명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명목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등 관광 위주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58,800,000원을 지원하는 등 17개 기관은 [별표 1]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명세(2014~2015년)<sup>3)</sup>”와 같이 운영기준과 집행기준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 등 [별표 1] 기재 17개 기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인에게 총 974,776천 원의 국외여행경비를 선심성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였다.

## 2.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가.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절차 미이행 및 여행보고서 미제출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및 **△△△** 등 [별표 2] 기재 11개 기관의 「공무국외여행규정」(영천시 훈령) 등<sup>4)</sup> 제2조, 제3조, 제9조와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이 지원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과 동일하게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허가를 거쳐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 등 [별표 2] 기재 11개 기관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내역(2014~2015년)과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확인한 결과, **△△△**는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

3) 이번 감사기간 중 점검한 [별표 1]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명세”를 포함하여 영천시 등 17개 기관은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예산 항목으로 44억여 원(민간인 3,850명)을 집행함

4)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훈령 또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은 심사·허가를 거쳤으나 공무원  
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으로 민간인 공무원외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 등 [별표 2] 기재 4개 기관은 「공무원외여행규정」(○○○  
규칙 등)에 예산이 지원된 민간인 공무원외여행의 심사·허가를 받을 것과 공무원  
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등 상위 규정인 「공무원외여행  
규정」(대통령령)에 부합되지 않게 자체 규정을 운용하면서 민간인 공무원외여행  
에 대한 심사·허가를 거치지 않았고, 공무원외여행보고서도 제출받지 않는 등  
[별표 2] “민간인 공무원외여행 관리 현황(2014~2015년)”과 같이 자체 「공무원외  
여행규정」이 상위 규정인 「공무원외여행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 등 [별표 2] 기재 15개 기관은 민간인 공무원외여행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광 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공무원외  
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 나. 민간인 국외여비 산정업무 등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2조 제2항과 제16조 제1항 및 제30조의 규  
정에 따르면 국외여행자의 경우 위 규정의 [별표 3], [별표 4]에 따라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위 규  
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여행사의 견적을 기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 □과)의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업무 담당자 A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1인당 여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여행사가 제시한 1인당 연수경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2014. 10. 16. 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안하는 등 [별표 3] “민간인 국외여비 산정업무 등 부적정 관련자 명세”와 같이 **○○○**의 업무 관련자 3명은 1인당 연수경비를 2,500,000원으로 과다하게 산출<sup>5)</sup>한 후 **△△△** 지원 60%, 자부담 40%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해 11. 28. 자부담 1,010,000원을 제외한 1,490,000원을 농업인 24명(1팀)에게 각각 국외여비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 결과 [표]와 같이 2014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적정 국외여비보다 22,116,400원을 과다하게 지원되었다.

[표]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 대한 여비 초과 지급 명세

(단위: 원)

구 분	① 여행사 견적 기준 1인당 지원액	②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 1인당 지원액	③ 1인당 초과 지급액	④ 초과 지급액 합계
1팀 (24명)	2,500,000 <sup>1)</sup> ×60% <sup>2)</sup> =1,490,000	1,449,890 <sup>3)</sup> ×60%=869,930	①-②=620,070	③×24=14,881,680
2팀 (16명)	2,500,000×60%=1,490,000	1,729,720 <sup>4)</sup> ×60%=1,037,830	①-②=452,170	③×16=7,234,720
계 (40명)				22,116,400

- 주: 1. 여행사 견적에 따른 1인당 연수경비(5박 6일 및 6박 7일, 일본 기준)  
 2. 예산 지원 비율(자부담 40%)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1인당 여비(5박 6일, 일본 기준)

5) 여행 1팀의 경우 24명의 농업인이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 일원을 연수하는 것인데 통역비를 5,400,000원(225,000원×24명)으로, 행사비(차량, 식사, 입장료)를 24,414,240원(1,017,260원×24명)으로 산출하는 등 1인당 여행경비를 미리 2,500,000원으로 정해놓고 세부 항목의 금액을 끼워 맞춘 결과 농업인 1인당 실제 자부담액은 310,000원에 불과함

4.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1인당 여비(6박 7일, 일본 기준)

자료: 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다.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여비 미환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 국외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민간인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당초 계획된 공무국외여행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원한 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2014~2015년) 관련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 등 10개 기관은 [별표 4]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여비 미환수 사례”와 같이 42명의 민간인이 공무국외여행에 불참하였는데도 여비 22,621,630원을 환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 ▽과) “2014년 읍면동 체육회장 해외연수” 업무 담당 계장 B는 사전에 민간인의 불참 사실을 알고도 업무 담당자 C가 공무국외여행 불참자 5명으로부터 여비 5,000,000원 환수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등 [별표 5]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여비 미환수 관련자 명세”와 같이 ○○○ 등 [별표 5] 기재 3개 기관의 총 4명은 민간인의 공무국외여행 불참 사실을 알면서도 여비를 환수하지 않았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관련

이 건 △△△ 등 [별표 1] 기재 15개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운영기

준과 집행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거창군과 ○○○는 관광 일정이 포함되었지만 단순 선심성 국외여행이 아닌 사업 수행 목적에 부합됨을 주장하고 있으며, 거창군, △△△, ○○○ 등 3개 기관은 집행기준 ‘민간인 국외여비’ 규정에 지역주민 대표를 전문가의 예로 들고 있어서 이장·통장과 농업인도 지역주민 대표로서 전문가로 볼 여지가 있고, 행사 참석, 산업시찰·견학을 위한 여비 등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국내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국외 행사 참석, 산업시찰 등을 위한 국외여비도 지원할 여지가 있으므로 운영기준과 집행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영기준과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민간인에게 국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 자체가 선심성을 의미하므로 거창군과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②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이 건 ○○○ 등 [별표 2] 기재 15개 기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의 심사·허가 단계부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절차 준수는 물론이고 선심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는 여행사 견적을 기준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여비를 과다하게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를 산정할 것이고 민간인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을 제출받을 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당초 계획과 다

른 민간인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등 [별표 4] 기재 10개 기관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로부터 여비를 미환수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도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에 항공권 등 국외여행 사실의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며 사업담당자 등에게 업무 연찬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거창군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취지와 다르게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민간인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명세(2014~2015년)

(단위: 천원, 명)

기관명	사업명	예산과목	지원금액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인원 <sup>주)</sup>
	2014년 수출농가 해외시장 조사	민간인 국외여비	6,118	일본	3박 4일	10
	2015년 수출농가 유럽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9,450	네덜란드 등	6박 8일	9
	2015년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필리핀 등	6박 7일	18
	2014년 민주평통 안보현장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23,409	중국	4박 5일	20
	2014년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3,998	베트남	3박 5일	27
	2015년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3,995	일본	4박 5일	29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8,826	중국	4박 5일	29
	2015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9,393	네덜란드	5박 7일	17
	2014년 농민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3,000	라오스	4박 5일	23
거창군	2015년 농민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3,000	일본	4박 5일	23
	2014년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4,000	일본	4박 5일	21
	2015년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0,790	일본	4박 5일	22
	2014년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60,000	홍콩 등	3박 4일	50
	2015년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8,800	캄보디아	4박 6일	49
	2014년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30,000	일본	4박 5일	25
	2015년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5,000	일본	3박 4일	15
	2014년 그린농업대학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56,845	중국	3박 4일	78
	2015년 그린농업대학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9,451	일본	3박 4일	54
	2014년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	행사실비보상금	14,080	필리핀	4박 5일	44
	2015년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행사실비보상금	15,000	대만	3박 4일	30
	2014년 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중국	4박 5일	21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1팀)	민간인 국외여비	35,760	일본	5박 6일	24
	2014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2팀)	민간인 국외여비	23,840	일본	6박 7일	16
	2015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1팀)	민간인 국외여비	26,400	싱가포르 등	3박 5일	20
	2014년 읍·면·동 체육회장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7,000	중국	4박 5일	12
	2014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2,600	필리핀	4박 5일	20
	2015년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2,600	일본	4박 5일	20
	2015년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3,860	홍콩 등	4박 5일	7
	2014년 농업경영인회원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41,800	뉴질랜드 등	6박 8일	21
	2015년 수산경영인회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8,000	일본	5박 6일	34
	2014년 이장 산업시찰(현곡면)	행사실비보상금	6,400	일본	1박 2일	28
	2014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양남면)	행사실비보상금	3,960	중국	4박 5일	17
	2014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양북면)	행사실비보상금	4,000	중국	5박 6일	17
	2015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안강읍)	행사실비보상금	5,000	베트남 등	5박 4일	21
	2015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의동읍)	행사실비보상금	5,580	라오스	5박 6일	25
	2015년 통장 산업시찰(월성동)	행사실비보상금	5,200	중국	4박 5일	23
	2015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7,000	태국	4박 5일	25
	2014년 생활개선회 농업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2,450	중국	3박 4일	13
	2014년 이장단 선진행정 비교연수	행사실비보상금	31,500	중국	4박 5일	31
	2014년 농업경영인 국외농업 비교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0,500	태국	3박 5일	15
	2014년 농업경영인 국외농업 비교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0,500	필리핀	4박 5일	15
	2015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25,500	독일 등	7박 9일	16
	2014년 입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2,904	중국	4박 5일	15
	2015년 이장 선진지 국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47,267	태국	3박 5일	33
	2015년 음식문화 교류방문	행사실비보상금	4,072	일본	3박 4일	8
17개 기관	계		974,776			1,090
공통 확인사항	○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가 아닌 농업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단순 견학 위주의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실시 ○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민간인 공무국외여행비로 지급					

주: 실제 민간인 여행인원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리 현황(2014~2015년)

구 분	기관명	심사·허가 여부	여행보고서 제출 여부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및 여행보고서 제출 규정이 있는 기관 (11개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및 여행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는 기관 (4개 기관)		×	×
		×	×
		×	×
		×	×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민간인 국외여비 산정업무 등 부적정 관련자 명세

소 속	직급/성명	근무기간	비 고
-	-	-	민간인 국외여비 산정 및 연수대상자 관리 소홀
-	-	-	"
-	-	-	"
-	-	-	"

[별표 4]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여비 미환수 사례(2014~2015년)

(단위: 명, 원)

기관명	불참자수	미환수액 <sup>주)</sup>	미환수 사례
	1	1,111,110	○ 2015. 6. 22.~6. 28. '농업인 해외연수(필리핀 등)'를 실시하면서 사업담당 D가 인솔하여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여행에 참가한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였고 지원한 여비도 미환수
	4	3,200,000	○ 2014. 11. 24.~11. 28. '농업인 해외연수(중국)을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도 없었고 농업인들이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업담당자 E는 불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5	5,000,000	○ 2014. 8. 10.~8. 14. '읍면동 체육회장 해외연수(중국)'를 실시하면서 사업담당 계장 B 등은 사전에 민간인 3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솔공무원 F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에 따르면 2명이 추가로 불참하여 총 5명이 불참하였는데도 여비를 미환수
	1	600,000	○ 2015. 11. 26.~11.30.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일본)'를 실시하면서 여행 당일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담당이자 인솔공무원인 G는 여비를 미환수
	1	1,900,000	○ 2014. 8. 25.~9. 1. '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호주 등)를 실시하면서 여행 당일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여비를 미환수
	1	800,000	○ 2015. 5. 27.~6. 1. '수산업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일본)'을 실시하면서 사업담당 H가 인솔하여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여행에 참가한 것으로 결과를 보고하였고 지원한 여비도 미환수
	24	4,600,000	○ 2014~2015년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등 총 6건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도 없었고, 이장들이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업담당자들이 불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읍·면·동 개별적으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항
	2	1,660,000	○ 2014. 6. 10.~6. 13. '생활개선회 농업해외연수(중국)'를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도 없었고 농업인들이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업담당자 I는 불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1	1,500,000	○ 2015. 4. 3.~4. 11.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도 없었고 여행대상자들이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업담당자 J는 불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1	860,300	○ 2014. 8. 20.~8. 24. '임업인 해외연수(중국)'를 실시하면서 인솔공무원 K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여비를 미환수
	1	1,390,220	○ 2015. 12. 1.~12. 5. '이장 선진지 국외연수(태국)'를 실시하면서 사업담당자 L은 사전에 민간인 1명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원한 여비 환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음
10개 기관 계	42	22,621,630	

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전액 환수 완료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여비 미환수 관련자 명세

기관명	소 속	직급/성명	근무기간	비 고
	-	-	-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불참자에 대한 여비 환수 소홀
	-	-	-	"
	-	-	-	"
	-	-	-	"